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·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.

제28조제2항제3호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 7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, 별표 7의2 및 별표 8까지”로 하고, 같은 표 33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한다.

별표 2 98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고, 같은 표에 제99번부터 제10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9	이소토니타젠 (Isotonitazene)	N,N-diethyl-2-[2-[(4-isopropoxyphenyl)methyl]-5-nitro-benzimidazol-1-yl]ethanamine
100	알티아이-111	methyl (1 <i>R</i> ,2 <i>S</i> ,3 <i>S</i> ,5 <i>S</i>)-3-(3,4-dichlorophenyl)-8

	(RTI-111)	-methyl-8-azabicyclo[3.2.1]octane-2-carboxylate
101	유-48800 (U-48800)	2-(2,4-dichlorophenyl)- <i>N</i> -[(1 <i>S</i> ,2 <i>S</i>)-2-(dimethylamino)cyclohexyl]- <i>N</i> -methylacetamide

별표 3 21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고, 같은 표 22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며, 같은 표 33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고, 같은 표 34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며, 같은 표 35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고, 같은 표 36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며, 같은 표 38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한다.

별표 3 표에 제102번부터 제111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2	더블유아이엔-55,212-2 (WIN-55,212-2)	[(1 <i>R</i>)-2-methyl-11-(morpholin-4-ylmethyl)-9-oxa-1-azatricyclo[6.3.1.0 ^{4,12}]dodeca-2,4(12),5,7-tetraen-3-yl]-naphthalen-1-ylmethanone
103	에이엘-엘에이디 (AL-LAD)	(6 <i>aR</i> ,9 <i>R</i>)- <i>N,N</i> -diethyl-7-prop-2-enyl-6,6 <i>a</i> ,8,9-tetrahydro-4 <i>H</i> -indolo- [4,3- <i>fg</i>]quinoline-9-carboxamide
104	7-히드록시미트라지닌 (7-Hydroxymitragynine)	methyl (<i>E</i>)-2-[(2 <i>S</i> ,3 <i>S</i> ,7 <i>aS</i> ,12 <i>bS</i>)-3-ethyl-7 <i>a</i> -hydroxy-8-methoxy-2,3,4,6,7,12 <i>b</i> -hexahydro-1 <i>H</i> -indolo[2,3- <i>a</i>]quinolizin-2-yl]-3-methoxyprop-2-enoate
105	미트라지닌 (Mitragynine)	methyl (<i>E</i>)-2-[(2 <i>S</i> ,3 <i>S</i> ,12 <i>bS</i>)-3-ethyl-8-methoxy-1,2,3,4,6,7,12,12 <i>b</i> -octahydroindolo[2,3- <i>a</i>]quinolizin-2-yl]-3-methoxyprop-2-enoate

106	3,4-디클로로메틸페니데이트 (3,4-Dichloromethylphenidate)	methyl 2-(3,4-dichlorophenyl)-2-piperidin-2-yl acetate
107	디페니딘 (Diphenidine)	1-(1,2-diphenylethyl)piperidine
108	브로모-드래곤에프엘와이 (Bromo-DragonFLY)	(2R)-1-(4-bromofuro[2,3-f][1]benzofuran-8-yl)propan-2-amine
109	25에이치-엔비오엠이 (25H-NBOMe)	2-(2,5-dimethoxyphenyl)-N-[(2-methoxyphenyl)methyl]ethanamine
110	더블유-15 (W-15)	4-chloro-N-(1-phenethylpiperidin-2-ylidene)benzenesulfonamide
111	더블유-18 (W-18)	4-chloro-N-[1-[2-(4-nitrophenethyl)piperidin-2-ylidene]benzenesulfonamide

별표 5 60의 품명란 단서 중 “별표 6까지”를 “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”로 하고, 같은 표 61의 품명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, 별표 7의2 및 별표 8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.

별표 6 표에 제72번부터 제75번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	페니бут (Phenibut)	4-amino-3-phenylbutanoic acid
73	디클라제팜 (Diclazepam)	7-chloro-5-(2-chlorophenyl)-1-methyl-1,3-dihydro-2H-1,4-benzodiazepin-2-one
74	잘레플론 (Zaleplon)	N-[3-(3-cyanopyrazolo[1,5-a]pyrimidin-7-yl)phenyl]-N-ethylacetamide
75	수보렉산트 (Suvorexant)	[(7R)-4-(5-chloro-1,3-benzoxazol-2-yl)-7-methyl-1,4-diazepin-1-yl]-[5-methyl-2-(triazol-2-yl)phenyl]methadone

별표 8 제1호(1군) 13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3,800리터)”를 “(920리터)”로 하고, 같은 호 14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5,700리터)”를 “(1,893리터)”로 하며, 같은 호 15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1,900리터)”를 “(185리터)”로 한다. 별표 8 표에 제24번부터 제30번의 “품명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4	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(alpha-Phenylacetoacetonitrile, APAAN)
25	엔-펜에틸-4-피페리돈 (N-Phenethyl-4-piperidone, NPP)
26	4-아닐리노-엔-펜에틸피페리딘 (4-Anilino-N-phenethylpiperidine, ANPP)
27	3,4-메틸렌디옥시페닐-2-프로판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 (3,4-methylenedioxyphenyl-2-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, 3,4-MDP-2-P methylglycidic acid)
28	3,4-메틸렌디옥시페닐-2-프로판논메틸글리시딕엑시드메틸에스테르 (3,4-methylenedioxyphenyl-2-propanone methyl glycidic acid methyl ester, 3,4-MDP-2-P methylglycidic acid methyl ester)
29	알파-페닐아세토아세트아마이드 (alpha-Phenylacetoacetamide, APAA)
30	메틸-알파-페닐-아세토아세테이트 (Methyl-alpha-phenyl-acetoacetate, MAPA)

별표 8 제1호(2군) 2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5,320리터)”를 “(1,902리터)”로 하고, 같은 호 5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5,500리터)”를 “(1,814리터)”로 하며, 같은 호 7의 최대거래량란 중 “(6,000리터)”를 “(1,845리터)”로 한다. 별표 10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

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별표 10 제1호다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) <신 설>	제5조(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) ① <u>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법 제5조의3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</u> 을 처방·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.
(생 략)	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 략)	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(<u>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</u>)	3. ----- ----- <u>제3항</u> ----- ----- -----

4. ~ 15. (생략)	4. ~ 15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